



## 금오공과대학교

수신 현장실습 참여기업(기관)

(경유)

제목 2019년 하계방학 중 현장실습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대학교에서는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전문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현장경험·실무를 습득하는 학점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귀 기관(사)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운영일정

일정	내용	비고
5. 3.(금)	현장실습 참여기업(기관) 모집	· <b>실습업무에 맞는 전공학생</b> 선발 요청 · 일정에 맞추어 학생 선발 요망 · 기간 내 선발/비선발 등의 조치가 없을 시 센터에서 임의로 선발 예정
5. 6.(월) ~ 5. 10.(금)	현장실습 학생 1차 지원 (1.5배수 지원시 마감)	
5. 13.(월) ~ 5. 17.(금)	현장실습 기업-학생 1차 선발	
5. 20.(월) ~ 5. 24.(금)	현장실습 학생 2차 지원 (1.5배수 지원시 마감)	
5. 27.(월) ~ 5. 31.(금)	현장실습 기업-학생 2차 선발	
6. 20.(목) 예정	현장실습 사전교육	
6. 24.(월) ~ 8. 19.(월)	하계방학 현장실습 실시	4주 6. 24.(월) ~ 7. 19.(금)
		7. 22.(월) ~ 8. 19.(월)
		8주 6. 24.(월) ~ 8. 19.(월)

※ 공휴일은 현장실습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나. 지원대상: 금오공과대학교 3, 4학년 재학생 (졸업유예자, 학기초과자 포함)

다. 지원내용

구분	내용
학생 지원사항	· 기관→학생 <b>실습비 지원 필수</b> (월 40만원 이상, 실습종료 후 내역 제출) · 기관→학생 <b>산재보험 가입 필수</b> · 학교→실습학생 상해보험 가입

라. 현장실습 참여 신청 및 학생선발 ([붙임2] 현장실습 신청 매뉴얼 참고)

- 1) 참여신청: kit+산업체현장실습관리시스템(<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로그인  
→ 실습생모집내역 등록 → 2019년도 여름학기 선택 → 실습생 모집 상세내역, 교육 운영 계획서 입력 후 저장
- 2) 신청기한: **5. 3.(금) 까지 (가급적 빠른 신청 요청)**

3) 학생선발: kit+산업체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선발  
마. 문의사항: 금오공과대학교 취업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Tel)054-478-7892~1, Fax)054-478-7989, E-mail)intern@kumoh.ac.kr

- 붙임 1. 금오공과대학교 2019년 하계방학 현장실습 운영계획 1부.  
2. 현장실습 신청 매뉴얼 1부. 끝.

금오공과대학교총장



주무관      박미소      산학협력중점교수      이석문      취업지원본부장      윤성호\_자      2019.04.11.

협조자

시 행      취업지원본부-1009      ( 2019.04.11. )      접 수      (      )

우 39177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 http://www.kumoh.ac.kr

전화번호 0544787892      팩스번호 0544787989      / bms0113@kumoh.ac.kr      / 공개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 !

# 2019년 하계방학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계획

금오공대 취업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054-478-7892~1, [intern@kumoh.ac.kr](mailto:intern@kumoh.ac.kr))

## 1. 산업체 현장실습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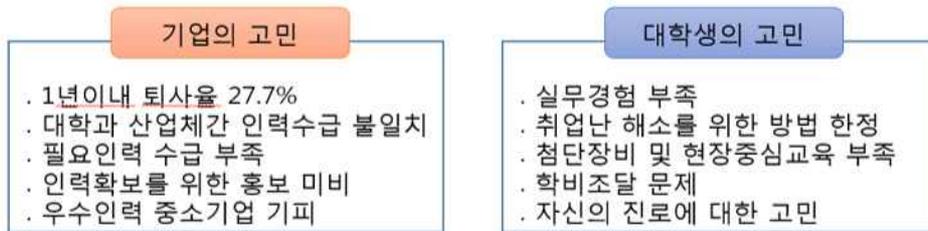
### ○ 현장실습이란?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공 교육과정 일부를**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 ○ 현장실습 추진배경



- 1) 국내 대학졸업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의 수요반영 미흡과 대학생의 현장경험 부족으로 **인재 수급의 미스매칭(mismatching) 현상 발생**
- 2) 학생들은 산업현장 및 직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진로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 후에도 쉽게 이직하는 것이 현실
- 3) 기업은 신입사원 교육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가 **산업체 현장실습**  
→ **학생의 진로 결정과 취업역량 강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 기업이 현장실습을 운영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우수인력 확보

전공분야의 기초 지식·기술을 갖추고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음

#### 체계적인 인력 사전 검증

일정기간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서, 정규직 채용 시 위험부담과 초기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인력 활용

현장실습생을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일손을 덜 수 있고 회사 내의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업무에 배치 가능

#### 지역사회에의 공헌 및 홍보효과

- 현장실습생이 학교로 돌아가면 각자의 경험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배운 것이 많고 유익하면 자동적으로 회사의 홍보가 가능(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를 가져옴

#### 대학과 산학협력 강화(IPBP 기업어로해결형 현장실습) 및 정부과제 인센티브 제공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체의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등의 지원 가능, '산학협력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정부과제 참여시 가산점 부여

○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현장실습의 본래 목적인 전공과 연관된 실무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구성 필요

※ **현장실습 교육계획서(기간 : 4주) 예시**

교육 항목	주요 교육 내용	소요 기간
1. 오리엔테이션	회사소개, 근무부서, 실습내용 안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1일
2. 공통 직무 교육	해당부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3일
3. 문제 제시 및 해결	현장실습 과제 제시 및 문제 해결 (IPBP 현장실습) (수행 과제에 대한 상세 기록 요망)	3주
4. 결과 발표회	결과 보고서 작성·발표 및 피드백	1일

※ 실습 수업계획은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와 대학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수정 가능

○ **“IPBP(Industry Project(Problem) Based professional Practice) 기업애로해결형 현장실습” 참여 요청**

 **기업애로기술 신청 → 현장실습 중 문제해결 → 취업·캡스톤디자인 연계 모델**

- 단기(4주)/중기(8주) 현장실습을 기업애로해결형 현장실습으로 진행하여 학생의 전공심화능력 향상
-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체의 win-win 현장실습 문화정착 및 취업률 제고



○ **실습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함(공공기관은 별도 협의)**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고시(개정 : 2017. 3. 1)에 의하면,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습지원비 : 실습기관에서 학생들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을 말함 (예, 월 40만원 이상)

## 2. 2019년 하계방학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계획

### ○ 실습 기간

- 2019.6.24.(월) ~ 2019.8.19.(월) 기간 중 4주 또는 8주

#### 1) 4주 실습 기간

- 2019.6.24.(월) ~ 2019.7.19.(금)

- 2019.7.22.(월) ~ 2019.8.19.(월) (공휴일(8/15)이 실습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2) 8주 실습 기간 : 2019.6.24.(월) ~ 8.19.(월)

구 분	이수 시기	1일시수	이수시간	이수학점
4주 이상	방학중(하계, 동계)	8	160H	3
8주 이상		8	320H	6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함.

※ 공휴일은 실습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개월 이상의 현장실습의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함

### ○ 참여 학부(과)

- 전자공학부, 기계공학계열(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계열(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산업공학부, 화학소재융합공학부(고분자공학, 소재디자인공학, 환경공학, 응용화학, 화학공학), 광시스템공학과, 메디컬IT융합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부, 경영학과, 응용수학과

### ○ 참여기관 혜택

- 산학협력마일리지 : 정부 R&D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 ○ 현장실습 참가 신청

- 업체 신청 기간 : 5. 3.(금)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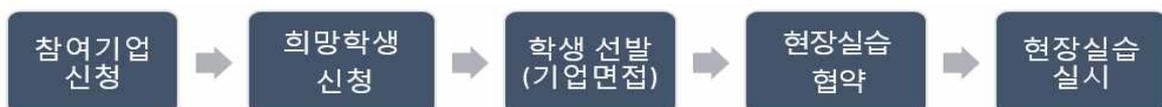
- 학생 선발 기간

구분	기간
1차 선발	5. 13.(월) ~ 5. 17.(금)
2차 선발	5. 27.(월) ~ 5. 31.(금)

※ 온라인 신청: <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

### ○ 기업의 학생 선발 프로세스

- 학생 선발 기간에 자체적으로 면접 진행 후 온라인으로 선발



---

# 금오공과대학교

## kit+산업체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

---

## 참여기업용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도서관 210호

취업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054-478-7892, 7891)

(FAX. 054-478-7989)

# 1. 현장실습 신청방법 (1)

kit+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 (<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 로그인  
※ 모든 업무 진행은 온라인으로 이루어 집니다.

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

kit+ 산업체 현장실습관리시... x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변 여비정산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메일 KORUS KAISER LINC관리자모드 LINC 홈 kit+ UMS 방문지도UMS 윈스틀서비-

KIT Industry Placement Management System  
**kit+**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MEMBER LOGIN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이디

패스워드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Notice 알려드립니다

- 본 사이트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업체를 위한 기관용 사이트입니다.
- 기업에게는 창의적 인재를 선택할 기회 제공! 학생에게는 현장실습 체험과 취업기회를!
- 본교의 kit+ 산업체 현장실습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COPYRIGHT BY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국립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 ▶ 홈페이지 주소 : <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
  - ▶ 기존 참여업체의 경우 : ID와 PW 입력 후 로그인
  - ▶ 신규업체의 경우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시 ID와 PW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일)
- ※ 패스워드 분실 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54-478-7892)

# 1. 현장실습 신청방법 (2)

## ① 실습생 모집내역 등록

※ 기업(기관)에서 입력한 실습생 모집내역은 현장실습 신청학생에게 정보가 공개됩니다. (단, 개인정보는 비공개)

※ 년도/학기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세요.



- ※ 부서별로 실습생 모집 상세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 ※ 모든 항목을 입력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실습생 모집 상세내역 ※ 추가 후 모집내역을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세요. [추가](#) [삭제](#) [저장](#)

※ 근무부서 및 관리자정보

근무부서	ex)연구소					소재지역	구미
관리자직위	팀장	관리자성명	홍길동	관리자연락처(-포함)	010-0000-0000	관리자 E_MAIL	intern@kumoh.ac.kr

※ 모집내역

현장실습 구분	방학중 4주	실습기간	개시일 :	2018-12-24	종료일 :	2019-01-11	추천교수	없을 시 비워놓습니다.	
남학생 모집인원	0명	여학생 모집인원	0명	성별무관	2명	월별 실습 지원비(원)	500,000	사유서제출	<input type="checkbox"/>

※ 실습생 근무관련

실습생 담당업무	Test 입니다.		전공분야	OO공학 등	자격요건	Test 입니다.	
근무 개시시각	09	근무 종료시각	18	교통제공여부	N		
숙식관계	숙소	비제공	중식	비제공	석식	비제공	

※ 현장실습 교육 운영 계획서 ※ 추가 입력 후 "실습생 모집 상세내역"에 있는 저장을 클릭하세요. [추가](#) [삭제](#)

주차/월별	주요 실습내용및 계획	주차/월별	비고
1	4주 / 8주 현장실습의 경우 "주" 단위로 작성	1	* 회사소개, 근무부서, 실습내용, 안전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2	12주 / 15주 현장실습의 경우 "월" 단위로 작성	2	

- ▶ 실습생모집상세내역 입력 시,  
"추가" → 내용입력 → 현장실습 교육운영계획서 입력 → "저장" 순서로 진행
- ▶ 월별 실습 지원비(원) : 학생 1명이 1개월 동안 업체에서 지원받는 금액 입력

## ② 등록 확인 : 가장 아래의 '실습생 모집내역'에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지 확인

실습생 모집내역

년도	학기	현장실습구분	실습기간		근무부서	관리자	모집인원				월별 실습 지원비(원)	사유서 제출
							남학생	여학생	성별무관	계		
2018	겨울학기	방학중 4주	2018-12-24	2019-01-11	ex)연구소	홍길동	0명	0명	2명	2명	500,000	

# 2. 온라인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아래의 표를 작성하여 오프라인 제출

(1/2)

(실습기관 작성용)

## 금오공과대학교 현장실습기관 참여 신청서

실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기관명·상호				FAX	
	기업구분(✓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연구소( ) 공공기관( )			설립년도	
	주 소 (구체적으로 기입요망)				종업원수	명
	홈페이지				매출액	억원
	홍보자료(필수)	업체 홍보자료를 <a href="mailto:intern@kumoh.ac.kr">intern@kumoh.ac.kr</a> 로 제출 ※ 파일명 : 실습기관명				
	업종 및 주력사업 주요 개발 생산품 (상세하게 기록요망)				금오공대 가족회사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실습생 모집내역	과 정(✓표)	<input type="checkbox"/> 방학중 (4주)	<input type="checkbox"/> 방학중 심화형(8주)	<input type="checkbox"/> 학기제/취업연계 (12주)	<input type="checkbox"/> 학기제/취업연계 (15주)	
	실습시작 희망일자	20 . . 부터	20 . . 부터	20 . . 부터	20 . . 부터	
	필요인원	남:( 명) 여:( 명) 무관:( 명)	남:( 명) 여:( 명) 무관:( 명)	남:( 명) 여:( 명) 무관:( 명)	남:( 명) 여:( 명) 무관:( 명)	
현 장 실 습 장 소 (위 주소 이외의 장소일 경우)						
실습생 직무	근무부서			숙·식 제공		
	담당할 업무 (상세하게 기록 요망)				지정한 학생	성명 : 학과 :
	1일 근무시간	오전 시~오후 시		8시간/일, 5일/주 근무		
	업무상 필요한 전공 분야 등 요구사항					
실습지원비 지급 요청	월정액 : 월 _____ 만원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월정액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습기관 멘토 (실습학생의 교육 및 안전 담당자)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락처(전화)	·직 장 :		·휴대폰 :		
	이메일주소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 3. 협약서 업로드 방법



## kit+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기관정보변경 | 로그아웃

금오공과대학교(부설연구소임) 4

현재 협약서 제출 상태입니다. 제출하신 파일명 : 협약서(샘플).pdf

2018-10-05

**2** 협약서 제출 상황.

협약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업체 직인을 찍은 후 스캔하여

파일을 업로드 해 주세요.

**3** 협약서 제출

1 MENU의 "협약서" 클릭

2 다운로드를 받아 직인을 찍은 파일을 스캔 (아래의 예시 참조)

3 업로드를 클릭하여 스캔한 파일 탑재

4 제출상태 확인

**MENU**

- 실습생 모집내역 등록
- 실습생 배정요청
- 근무상황부 작성
- 실습기관 평가서 작성
- 현장실습생 조회/출력
- 현장실습실시현황 조회
- 협약서 1
- 만족도 및 수요조사
- 현장실습관리비 지원금신청

## [예시]

### 현장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교육 협약서는 **변화융합인재** (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과 금오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현장실습 참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기간은 현장실습 신청 시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된 기간으로 정하며, 교육 장소는 "실습기관"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되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3조(교육 방법 및 내용)** 교육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수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대학"은 실습 시 준수사항, 안전교육, 바람직한 교육 태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실습기관의 의무)** "실습기관"은 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교육 지도 담당자를 배치하여 "학생"의 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 ③ "대학"이 현장 방문 지도 및 협약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제5조(대학의 의무)** "대학"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① 교육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임하도록 한다.
- ② 교육 중 "실습기관"의 사규 및 안전관리규정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③ 교육 기간 동안 사용하는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 ④ 교육 중 습득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학생의 보호)** ① ("학생"이 여성인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 업무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월 1일의 휴무를 주어야 한다.

**제7조(교육 기준시간)** 교육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4주를 기준으로 연속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습지원비)** "실습기관"과 "대학"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4주 기준 월정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 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제9조(교육의 평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을 포함한 실습기간 평가서를 교육 종료와 함께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기준에 따라 학생을 부여한다.

**제10조(안전·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학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교육 실시, 성직용예방교육 실시, 직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 기구 설치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 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및 재해보상)** ① "대학"은 "학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 보험은 사망, 후유장애 등의 보장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은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 등에 의한 보상금 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습기관"은 "학생"의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경비 지원)** 교육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경비는 "실습기관" 및 "학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교육 협약의 해지)** "실습기관"과 "학생"은 교육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5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9월 11일

실습기관 · 실습기관명 : **한국화학연구원**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가경로 44**

· 대표자(또는 부사장) : **이국호**

**직인**



대 학 · 금오공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의미

### ①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

❖ 이에,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

### ②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외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도 발생하는지?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 ①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현장실습생' 범위는?

❖ 고교(일반계고, 특성화고), 대학(전문대학, 대학) 등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

②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 실습수업 등'의 범위는?

❖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 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

❖ 업무 종사가 없는 단순견학\*(observation),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 단순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교육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장실습

<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제외 현장실습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③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에 포함되는지?

❖ 포함,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④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습도 포함되는지?

❖ 포함, 산재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도 포함

##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납부 의무

### ①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 조치사항은?

❖ 일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함

❖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신고와 동일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자 고용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고용신고

- 01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02 고용관리 메뉴 선택
- 03 근로자고용신고(10501) 선택
- 04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 05 근로자고용신고내역 신청구분 '산재' 선택
- 06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산재만 부과' 선택 및 사유 '현장실습생' 선택
- 07 '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후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출을 통한 고용신고

- 01 '근로자 고용 신고서' 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02 산재보험 [ √ ] 근로자 고용 신고서란 체크
- 03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란에 '52-03' 기재
- 04 현장실습생 성명,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기재
- 05 신고인(대표자)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② 현장실습기간 종료에 따라 더 이상 현장실습생을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 조치 사항은?

❖ 일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업주의 '고용관계 종료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 현장실습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 현장실습 종료일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와 동일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 01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02 고용관리 메뉴 선택
- 03 근로자고용종료신고(10502) 선택
- 04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 05 근로자고용신고내역 보험구분 '산재' 선택
- 06 산재보험 '상실일' 등을 입력한후
- 07 '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후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직접 제출을 통한 고용관계 종료신고

- 01 '근로자 고용 신고서' 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02 산재보험 [ √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란 체크
- 03 사업장 내용 기재
- 04 현장실습생 성명, 상실연월일 등 기재
- 05 신고인(대표자)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③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 ❖ 전년도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함

④ 보수총액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범위는?

- ❖ 명칭에 관계없이 현장실습의 대가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
  -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
- \* 임금대장,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
-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해당 현장실습생의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

⑤ '무급 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는지?

- ❖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 이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0원임

### 사업주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 시 보상 및 제재

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현장실습생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②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가 고용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10%를 사업주에게 징수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 다만, 현장실습생 고용신고를 제 때 하지 못했더라도 보수총액 신고(매년 3월 15일) 시 전년도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다가 현장실습생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

\*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현장실습생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최초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함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보상범위·수준**

① 현장실습생 산재 발생 시 보상범위 및 수준은?

❖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요양·휴업급여 등)

❖ 훈련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

② 학교안전공제회(고교), 한국교육안전공제회(대학)의 공제급여와 중복 보상되는지?

❖ 학교안전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에 따라 현장실습을 주관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제도는 산재보험급여 제외부분만 보상하므로 중복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현장실습생 안전공제 약관 제3장 제9조

**참고**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요양급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1일 214,402원의 70%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보상연금	2년이상 요양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연금 :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 '10.11.21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365일분의 60%) + 진폐장해연금(1~3급 월11일분, 5~7급 월6일분, 9~13급 월 2일분)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직업재활급여	장해1급~12급장해급여자 또는 요양중으로서 장해1급~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금액) 직업훈련비용: 6,000,000원(1인당) 직장복귀지원금: 300,000원~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 450,000원(월) 재활운동비: 150,000원(월)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시행 2018. 9.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 9.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부칙** <제2018-69호, 2018. 9.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	----------------------------------

구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체류자격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월 평균보수) (원)	자격취득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자격취득부호	특수직종부호	직역금부호	자격취득부호	보험료 감면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직종명/부호	직종부호	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부호
1			[ ]에 [ ]아니오	기업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	실습 시작일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에, [ ]아니오) <b>[ ✓ ]산재보험</b>	15	40	실습종료일	52-03	[ ]에 [ ]아니오
2			[ ]에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에, [ ]아니오) [ ]산재보험					[ ]에 [ ]아니오
3			[ ]에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에, [ ]아니오) [ ]산재보험					[ ]에 [ ]아니오
4			[ ]에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에, [ ]아니오) [ ]산재보험					[ ]에 [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p>[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들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p> <p>[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p> <p>[지역연금 부호] 1.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p>
건강보험	<p>[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종가입</p> <p>[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p>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급품 지급)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